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12.

정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2. 5., 권칠승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12. 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○ 제422회 국회(임시회)

– 제2차 정무위원회 (2025. 2. 19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○ 제429회 국회(정기회)

–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(2025. 11. 25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– 제11차 정무위원회 (2025. 11. 27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권칠승의원)

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,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, 인천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. 또한,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,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,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최 기 도)

☐ 현행법¹⁾은 재해부상군경·재해부상공무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

1) 개정안이 발의된 5건의 법률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

특수임무부상자, 전상군경·공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본인은²⁾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³⁾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그 밖의 유공자와 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은 6곳에 불과하고, 위탁병원의 규모가 작아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하여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- 이에,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에 공공의료기관⁴⁾을 포함함으로써,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.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을 의미함

- 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·공상군경·4·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제73조에 따른 6·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(전투종사군무원등)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- 3) 국가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을 말함.
- 4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3. “공공보건의료기관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“공공단체”라 한다)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·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
 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공공단체의 범위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.
 - 1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 - 2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 - 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
 - 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 - 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 - 6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
 - 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 - 8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 - 9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 - 10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 - 11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
 - 12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□ 개정안에 따라 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면,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고, 진료기관 분산효과를 통한 대기기간 감소와 함께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 수 증가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○ 특히, 유공자의 유가족(75세 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자 제외)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,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, 이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□ 다만, 개정안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○ 첫째,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확대되는 경우, 전체적인 진료 인원과 진료 횟수가 증가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재원조달방안이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음.

-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만 지원하는 현행 의료지원 체계에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용은 편성된 예산에 비하여 부족하여 대규모 이·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

므로,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관하여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.

- 특히,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의료기관은 개소당·환자당 진료비 청구액이 높은 종합병원(59%), 상급종합병원(13%)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산정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○ 둘째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,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·계층·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바,⁵⁾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한편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5건의 개정안 외 다른 법률⁶⁾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들도

5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(이하 “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
2.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
3.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, 병상,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
4.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·관리 방안
5.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·계층·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
6.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
7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6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- 그 밖에,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이 포함되므로,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문언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강민국의원)

- “위원회 대안”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(대안반영폐기)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